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자격 명확화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0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유산수리 자격 명확화(안 제5조)	2
2. 부칙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14.

다. 회 부 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 자격 명확화(안 제5조)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 자격을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u>국가유산수리업자에</u> <u>게</u> 수리하도록 하거나 <u>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u>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u>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 ----- ----- ----- ----- ----- <u>국가유산수리업자</u> <u>가</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국가유산수리업자가</u>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u>함께</u>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행	개정안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제5호¹⁾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²⁾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각각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³⁾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격증을 받은 사람,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4조⁴⁾ 손해배상책임, 제35조⁵⁾ 하자담보책임, 제36조⁶⁾ 보고서 작성 등의 주체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⁷⁾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등을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제도에서 국가유산수리업자 없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을 수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의 의무를 가지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록 개정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의무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임.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은 손해배상, 하자보증 외 기술자 배치, 수리보고서 작성 등 수리 수행과정 전반에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기본 자격요건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률 규정과 현장 운영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가유산수리의 기본 자격을 개정안과 같이 국가유산수리업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려는 것이나, 개정법과 관련되는 하위법령 개정 등 연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80

국가유산수리기술재(기능자) 및 국가유산수리업 등 현황

[2025. 12. 31. 기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6개 직종)

(단위 : 개)

종 별	보 수	단 청	실 측 설 계	조 경	보 존 과 학	식 물 보 호	계
개	847	595	122	296	182	198	2,240
자격취소	50	33	18	2	1	0	104
총계	797	562	104	294	181	198	2,136

□ 국가유산수리기능자(20개 직종)

(단위 : 개)

종 별	한 식 목 공	한 식 석 공	화 공	드 잡 이 공	번 화 와 공	제 작 와 공	한 식 미 장 공	철 물 공	조 각 공	칠 공	도 금 공	표 구 공	조 경 공	세 척 공	보 존 과 학 공	식 물 보 호 공	실 측 설 계 사 보	박 제 및 표 본 제 작 공	모 사 공	온 돌 공	계
개	2,086	1,492	1,121	520	878	65	756	105	400	1,037	249	263	1,038	551	1,568	453	854	61	302	256	14,055
자격 취소	179	118	74	77	122	2	102	0	18	12	9	8	40	4	6	3	4	1	0	0	779
총 개수	1,907	1,374	1,047	443	756	63	654	105	382	1,025	240	255	998	547	1,562	450	850	60	302	256	13,276

* 국가무형유산보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28개)

□ 국가유산수리업 등 (12개 업종) : 685개 업체

(단위 : 업체수)

업종별	종합 국가유산 수리업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국가 유산 실측 설계업	국가 유산 감리 업	계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변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			
업자수	273	87	72	84	5	2	6	1	1	0	81	73	685